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593
----------	------

2025년 4월 23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3월 31일, 한신 의원 외 12명

나. 회부일자 : 2025년 4월 2일

다. 상정일자 : 제330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5년 4월 23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한신 의원]

가. 제안이유

- 「수의사법」에 따라 반려동물 진료비용 게시가 의무 사항이 되었으므로 자율적으로 진료비를 표시하는 경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1)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의사법」

4.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폐지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¹⁾」를 폐지하는 것임.

2022년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수술 등 중대진료에 대한 예상 진료비용의 고지 및 동물진료업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게시가 의무화(제20조)되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제30조) 및 동물진료업 정지(제33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41조)를 하고 있는바,

자율적으로 진료비를 게시하는 경우 그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동 조례는 현행 상위법 규정과 상충하고 있고 유명무실함으로 이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 이견 없음.

「수의사법」

제19조(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 ① 동물병원 개설자는 수술등중대진료 전에 수술등중대진료에 대한 예상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술등중대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수술등중대진료 과정에서 진료비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수술등중대진료 이후에 진료비용을 고지하거나 변경하여 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①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② 동물병원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진료비용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동물병원마다 다른 진료비 차이로 인해 동물소유자가 느끼는 불신이 증가한다는 점과 과잉 진료로 과도한 진료비가 청구될 수 있다는 민원 등에 따라 진료비에 대한 예측 가능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정('21.5.20. 제정)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한신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593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3월 31일

발 의 자: 한 신, 강석주, 박승진,
박춘선, 박칠성, 봉양순,
송재혁, 왕정순, 이영실,
이용균, 이원형, 임규호,
정준호 의원(13명)

1. 제안이유

- 수의사법 에 따라 반려동물 진료비용 게시가 의무 사항이 되었으므로 자율적으로 진료비를 표시하는 경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 를 폐지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수의사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수의사법」에 따라 반려동물 진료비용 게시가 의무 사항이 되었으므로 자율적으로 진료비를 표시하는 경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병준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 계 분 석 관	김지혜

☎ 02-2180-7952
e-mail : kjh0123@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